논문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고찰

2017년도 교육(지원)청 지표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ssue and Resolving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 Targets of the 2017 Education Department Indicator

권도균(Kwon, Do-gyun)*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기존의 연구
2. 기관평가제도 현황
   1) 법적 근거
   2) 개념
   3) 목적
   4)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주기
   5) 평가자료 제출·등록 방법
   6) 평가 프로세스
   7) 2017년도 평가지표 발표
   8) 지표의 변화 사항
3.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
   1) 2017년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2) 평가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4. 결론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박사과정.
■ 투고일 : 2016년 6월 13일 ■ 최초심사일 : 2016년 6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초록〉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주제어: 개선방안, 기관평가제도, 기록관리, 평가지표, 평가프로세스

〈Abstract〉

A records management agency assessment must reflect the possibility of actual situations including conditions and implementation.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s and indicators tools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However, the reality is difficult if they are not conducted through the resources and efforts of the organization. The 2017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index, which was published in March 2016, are expected to be highly difficult to perform as the frontline field tasks of the institution for a year. It is composed of indices with questionable effectiveness that are difficult to implement on the field. Some of these include the following: three training sessions for more than 10% of all employees, submission of document archive pictures of all schools, submission of the index items

of all documents, increasing the utilization level of the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the electronic documents that have not been transferred for several years, the transfer of non-electronic documents of all institutions, reclassification of non-disclosed records, etc. It recognize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2017 evaluation indicators that the National Archives has mentioned about operations. As such, now is the time to reflect th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to amass knowledge that will help improve records management.

Keywords : Improvement, Evaluation system, Record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Evaluation process

1. 서론

1) 연구 목적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대폭 개정된 2007년 이후,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되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기록물에 관심 없던 대다수 공공기관이 기관평가 시행 이후엔 발표되는 평가점수와 등급 때문에라도 기록물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공식적으로 채용된 2005년 이래, 공공기관

1) 물론 채용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록물관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업무분장의 적절성' 이라는 지표가 있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기록물관리만 전담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와 시군구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관리 업무 외에 여러 업무를 맡는다고 알려져 있다.

은 기록관리 인식과 인프라, 업무 등에 관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 기관의 기록관리 실태가 외부로 드러나고, 평가점수와 등급이 발표되는 기관평가는 그야말로 뜨거운 주제다. 실제 교육청의 경우, 기록관리에 관한 지원이나 관심은 높지 않으면서도, 발표되는 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담당자(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을 말하는 '높은 수준의 법제도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기관평가 부분에서 더욱 부각된다. 공공기관과 소속 기록관이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나, 기록학계에서 과연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가 현장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관심은 드문 것 같다. 현장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기록물관리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언급된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실현가능한지, 혹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록원이 기관평가를 발표하고 안내할 때마다 발표 현장에서 피평가기관의 담당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결이 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또 이를 다룬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는 전체 행정의 일부분이며 기관평가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므로,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연구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2016년 3월 25일 발표한 2017년도 기관평가지표는 새롭게 제기한 2~3개의 지표를 제외하면 2012년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교육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관평가를 경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인터뷰를 하였다. 대상인원은 교육청 근무경력 5년 이상,

기관평가 4번 이상 경험이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8명이다. 인터뷰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였다. 평균 인터뷰 시간은 7~10분 정도였다. 질문내용은 평가제도와 2017년도 발표된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인터뷰한 8명의 의견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견해는 아니므로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담당자의 의견이라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후 이들의 발언은 담당자A, B 등으로 표현하겠다.

2) 기존의 연구

2017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지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 중, 2008년 이전에는 기관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의 지표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기관평가가 시행된 후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적게나마 있었다.

최초로 기관평가의 근본이 된 두 개의 연구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국가기록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이었다. 2006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체계적 확산방안」을 수행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ISO15489의 번역판이란 평이 있었던 KS X ISO 15489 기록관리 표준에 대한 이행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제도와 도구, 절차를 제시하여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평가를 체계화하고, 민간기관의 표준 이행을 위한 견인제도를 주장하였다. 각국의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기존 '지도점검제도'의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후 기록관리 평가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2007년에는, 2006년의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해마다 현황평가를 실시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를

개발한 사례로 국내 기록관리 기관평가연구로 의의가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실제로 2008년 이후 기관평가 지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기록관리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방법으로 국가표준을 개발, 현장에서 실행하고, 현장의 경험을 다시 표준에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그 실현 방법으로 평가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경험이 다시 국가표준과 평가제도에 반영된 부분은 만들어진 표준과 적용된 지표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본다.

이영숙, 천권주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인 2006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기관 자체평가와 국가기록원이 병행으로 평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영숙, 천권주 2006). 전수진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지표를 조직환경, 기록관업무, 처리과 업무영역에 맞춰 개발하는 평가도구 개발에 관하여 논하였다(전수진 2008).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연구 중 기관에 적용된 실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몇 개 있다(김솔 2010; 백미점 2010). 최현난은 한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평가가 도입된 초기에 한국의 지표와 3개국의 지표를 비교분석한 것이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최현난 2010).

신원영은 한국의 기관평가제도가 진행된 6년의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의 평가 자료와 원칙을 기반으로 2년 동안 평가 점수폭이 큰 피평가기관 8곳을 대상으로 기관의 담당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아쉬운 점은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서술되어 현장 적용여부와 발전방안이 매우 피상적인 것이다(신원영 2014). 권도균은 2015년까지 시행된 시도교육청의 기관평가 지표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운영

과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권도균 2016).

2. 기관평가제도 현황

기관평가의 현황과 2017년도 지표는 국가기록원의 발표자료(국가기록원 2016.1)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자료집(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을 인용한다.

1) 법적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평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발표 자료집에 따르면 1999년 법령 제정 당시는 실태 지도점검으로 기록관리 수준만 진단하였다. 2007년, 기록관리 법령의 개정으로 전공공기관 평가 및 국무회의 보고 근거를 마련했다.

2) 개념

기관평가는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과정뿐 아니라 이를 관리 · 지원하는 기관 역량과 대상 집단의 만족도까지를 확인 · 검토할 수 있는 기록관 단위의 종합평가'이다. 즉, '기록관리 업무활동 전반의 과정과 이에 관한 기관 역량 등을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생산, 정리, 기술, 보존, 이관, 폐기 등과 같은 기록관리의 고유 업무와 이러한 고유 업무를 관리 · 지원하는 경영, 정책,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관 역량에 관한 정책 · 사업 · 업무를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결과 등을 점검 · 평정하는 것이다.

3) 목적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관평가는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66). 첫째, 기록물관리법과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춘 제도적 견인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관리법과 관련 표준을 실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평정함으로써 정착되고 확산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피평가기관에 대한 상벌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평가기관의 업무개선을 통해 기록관리 실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기관장부터 기관 전체 구성원들의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책무와 사명감 등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의 정착 및 확산으로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업무행위를 개선하고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주기

기관평가 대상 기관은 기관평가 초기 시점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에 57개, 2009년 110개, 2010년 229개, 2011년 240개, 2012년 443개, 2013년도에 국공립대학교를 추가하여 2016년 현재 477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주기는 2016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이 매년 평가를 받고, 다른 기관들은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 전체 기관이 평가를 받는 형태였다. 2017년도부터는 전체기관

이 매년 평가를 받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발표했다.[2)]

〈표 1〉 2016년 평가대상기관[3)]

합 계	중앙 행정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교
477	51	143	17	176	39	51

5) 평가자료 제출 · 등록 방법

전년도 기록관리 업무실적 및 서고 · 장비 현황을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에 등록(시스템입력일 기준)하고 있다.

6) 평가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는 1차로 기록관리평가시스템에 제출된 실적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1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한다. 정량평가만 1차에서 점수를 발표하고 이의제기를 받는다. 2차로 권역별, 기관별 점검회의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확정한다. 정성평가는 11월의 최종평가에서 발표된다.

7) 2017년도 평가지표 발표

2017년도 평가지표 발표과정은 첫째, 기관평가 설명회 개최 공문과

2) 매년 기관평가를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전문요원의 의견은 매해 실시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기를 격년이나 3년 주기로 변경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2017년부터 모든 기관을 다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관평가에서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3) 2017년도 평가대상기관도 2016년 평가대상기관과 같거나 혹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을 2016년 1월 7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에서 발송했다(「2016년도('15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계획 통보 및 기관평가 설명회 개최안내」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65(2016.01.07.) 둘째, 2016년 1월 20일 기관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장에서 2017년 기관평가 개선(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국가기록원에 전달되었다. 셋째, 2017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 사전지표가 2016년 3월 25일에 피평가기관에 도착하였다.「2017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 사전 안내」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446(2016.03.25.) 지표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으로 하지 않고, 일부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했다.[4)]

8) 지표의 변화 사항

2017년도 발표 지표의 내용은 1월 20일 설명회와 1월 7일 공문에서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했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표 개수의 변화는 2015년~2016년도에는 평가지표가 10개 안팎이었다. 평가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했던 평가 지표는 20개 정도였다. 기관평가를 진행하면서 기록관에서 실행에 어렵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없어진(일몰제)지표와 유사한 지표로 통합되었던 것들이 나타났다. 매해 평가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지표수가 2015년까지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던 기관은 해마다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피평가기관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표 5개 중 〈표 2〉, 〈표 3〉, 〈표 4〉은 시도교육청의

4) 연구자가 2016.03.29.오전 11시 국가기록원 기관평가담당자와 전화통화시 의견조회의 기간과 대상기관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만 기관조회를 거쳤다고만 말했다. 교육지원청이나 대학교, 공사공단 소속 담당자는 의견조회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했고, 시도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메일로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가지표이다. 2017년 지표가 〈표 2〉, 2015~2016년 지표가 〈표 3〉, 2012년 이전 지표가 〈표 4〉이다. 교육지원청의 평가지표는 〈표 5〉, 〈표 6〉이다. 2017년 지표가 〈표 5〉, 2012년 이전 지표가 〈표 6〉다. 교육지원청의 2015년~2016년 지표는 생략한다.

이 중 2017년도 지표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표 1〉의 지표 1-5 '관할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여부'와 〈표 4〉의 지표 2-8.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이다. 다른 지표들은 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다루어졌던 지표들로 파악된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제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지표로 보인다.

〈표 2〉 2017년도 시 · 도교육청 평가지표(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b)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록관리 업무기반	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부(5) 1-2. 시설·장비 구축 여부(5) 1-3.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3) 1-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3) 1-5. 관할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여부(5) 1-6. 직원 기록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4) 1-7. 기록관리업무 관리자, 담당자 교육 이수(4) 1-8. 학교 기록물관리 환경의 적절성(6) 1-9.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실시 여부(4) 1-10.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여부(4)	43점	정량
기록관리 업무추진	2-1.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의 적절성(2) 2-2. 회의록 관리의 적절성(3) 2-3.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적절성(3) 2-4. 행정박물 관리의 적절성(2) 2-5. 간행물 관리의 적절성(3) 2-6. RMS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여부(3) 2-7. 이관대상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 변환 여부(3) 2-8. 처리과 전자기록물 RMS 이관 여부(3) 2-9.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여부(3) 2-10.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여부(4) 2-11.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8)	37점	정량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	3-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6) 3-2. 기록정보서비스 제공(6) 3-3.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6) 3-4. 기록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력(2)	20점	정량·정성
총계	**지표수 : 25개**	**100점**	

〈표 3〉 2015년~2016년 시도교육청 지표(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b)

구분	항 목	평가지표	배점	
			2016년	2015년
기록관 운영	1. 기록관 운영의 적절성	1-1. 인프라(조직, 인력, 시설·장비) 구축 (10)	10점	10점
	2. 기록관 업무기반의 적절성	2-1. 지도·감독 및 교육	10점	5점
		2-2.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0점	5점
기록관리 업무	3. 기록관리 업무 절차의 적절성	3-1. 기록물 이관	10점	10점
		3-2.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0점	10점
기록서비스 / 가중치 업무	4. 기록물 공개 및 활용	4-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10점	5점
		4-2.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0점	5점
	5. 기록관리 업무 개선	5-1. 기록관리 우수사례	10점	10점
		5-2. 기록관리 사회적 신뢰도	가점·감점	
정책과제 업무		1. 보유기록물 효율적 활용기반 조성 2. 전자기록물 이관 개선방안 3. 구전자문서 관리방안 개선 4. 기록콘텐츠, 전시 등 서비스 확대 5. 학교기록물 개선방안 마련(시도교육청 필수) **➲ 5개 중 기관별 택 1~2** **※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과제가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20점	40점
계		**지표수 : 10개**	**100점**	**100점**

〈표 4〉 2008~2012년도 시도교육청 기록관리 평가지표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2011)

분야		평가 지표	12년	11년	10년	09년
기록관 운영 (35)	인식 (24)	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5	5	5	8
		1-2. 제도 및 업무개선 실적	5	5	5	
		2-1. 관할기관·처리과 지도·감독 및 후속 조치	6	4	4	2
		3-1. 기록관 담당자 교육실적	4	4	5	5
		3-2. 처리과 담당자 교육실적	4	4	5	5
	인프라 (11)	4-1.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4	5	5
		4-2. 전문요원 채용 적절성	6	4	–	–
		5-1. 직제 및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일몰제	일몰제	4	5
		6-1.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일몰제	일몰제	5	5
		7-1. 서고면적 확보 기준 준수	일몰제	일몰제	일몰제	3
		7-2. 기록관리 관련 열람실 기준 준수	일몰제	일몰제	일몰제	2
		7-3. 장비기준 준수	일몰제	일몰제	일몰제	5
		7-4.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록 관리 업무 (65)	생산 (6)	8-1. 중요기록물의 작성 및 관리 적절성 (통합지표)	6 (통합)	–	–	–
		8-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여부 적절성		3	2	2
		8-2. 조사/연구/검토서 작성 관리의 적절성		3	2	2
		8-3.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일몰제	2	2
	관리 (10)	8-4. 생산현황보고 준수	일몰제	일몰제	2	3
		8-5. 기록물 보유량 등의 현황관리	5	5	2	3
		8-6.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운영	5	7		
	이관 (20)	9-1.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기록관)	12	12	10	12
		9-2. 기록관기록물이관규정준수(→영구관리기관)	8	12	10	12
		9-3.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관리 적절성	8	8	8	8
	보존	10-1. 보안·재난 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일몰제	5	5	6
	처리 (12)	11-1.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12	10	8	10
	서비스 (17)	12-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5년 단위) 실시	12	10	6	보류
		12-2. 기록관 보유 목록의 관리	5	3	3	3
		12-3. 공공기록 편찬 및 전시 등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가점)	–	–	–

기타	13-1. 사회적 신뢰도	(감점)	-	-	-
	13-2. 평가자료 제출기간 준수	(감점)	(감점)	(감점)	(감점)
계	점 수	100	100	100	100
	지표수	18	17	19	20

〈표 5〉 2017년도 교육지원청 평가지표(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b)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록관리 업무기반	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부(5) 1-2. 시설·장비 구축 여부(5) 1-3.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3) 1-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3) 1-5. 직원 기록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4) 1-6. 기록관리업무 관리자, 담당자 교육 이수(4) 1-7. 학교 기록물관리 환경의 적절성(6) 1-8.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실시 여부(4) 1-9.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여부(4)	38점	정량
기록관리 업무추진	2-1. 회의록 관리의 적절성(3) 2-2.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적절성(3) 2-3. 학교역사기록물 기획수집 여부(2) 2-4. RMS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여부(3) 2-5. 이관대상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 변환 여부(3) 2-6. 처리과 전자기록물 RMS 이관 여부(3) 2-7.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여부(3) 2-8.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4) 2-9.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정수점검 실시 여부(6) 2-10.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여부(4) 2-11.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8)	42점	정량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	3-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6) 3-2. 기록정보서비스 제공(6) 3-3.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6) 3-4. 기록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력(2)	20점	정량·정성
총계	지표수 : 24개	100점	

〈표 6〉 2011~2012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지표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2011)

분야		평가 지표	2012년 교육지원청	2011년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 (50/45)	인식 (24/16)	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5	5
		1-2. 제도 및 업무개선 실적	5	5
		2-1. 관할기관·처리과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4	4
		3-1. 기록관 담당자 교육실적	5	5
		3-2. 처리과 담당자 교육실적	5	5
	인프라 (26/29)	4-1.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5
		4-2. 전문요원 채용 적절성	6	4
		5-1. 직제 및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	-
		6-1.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5	5
		7-1. 서고면적 확보 기준 준수	3	3
		7-2. 기록관리 관련 열람실 기준 준수	2	2
		7-3. 장비기준 준수	5	5
		7-4.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록 관리 업무 (50/55)	생산 (6/9)	8-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여부 적절성	2	2
		8-2. 조사/연구/검토서 작성 관리의 적절성	2	2
		8-3.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2	2
	관리 (4/22)	8-4. 생산현황보고 준수	2	2
		8-5. 기록물 보유량 등의 현황관리	2	2
		8-6.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운영	-	-
	이관 (18/8)	9-1.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기록관)	8	8
		9-2. 기록관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영구관리기관)	4	4
		9-3.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관리 적절성	8	8
	보존 (4/6)	10-1. 보안·재난 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4	5
	처리 (5/6)	11-1.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8	8
	서비스 (10/-)	12-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5년 단위) 실시	6	6
		12-2. 기록관 보유 목록의 관리	4	3
기타		13-1. 사회적 신뢰도	(감점)	
		13-2. 국가 주요기록물의 이관	-	-
		13-3. 평가자료 제출기간 준수	(감점)	(감점)
계		점 수	102	100
		지표수	25	23

3.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

1) 2017년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2017년도 시도교육청 지표〈표 2〉와 교육지원청 지표〈표 5〉를 보면 '관할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여부', '조사 · 연구 · 검토서 관리의 적절성',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교육청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처리과중 대다수가 학교로 되어 있으며 업무상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특징상 교육청과 관할 학교를 다루어야 하는 점은 같지만, 기관의 특징상 교육지원청에서 달성하기 어려운—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지표도 있다. 연구자가 판단하건대 2017년도 평가지표 중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지표가 하나 있다. 〈표 1〉의 지표 1-5 '관할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여부'로,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표이다. 교육지원청의 인원 배치는 인사권이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감만이 할 수 있다. 2016년 이전까지 지원청의 지표였으나, 2017년도 지표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뀌었다. 교육지원청 전문요원의 배치를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요구한 것이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후 거론하는 지표들은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 1명이 1년 동안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 혹은 실행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인터뷰에서 예상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거론하는 문제점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거론한다. 실제 기관평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2017년도 지표를 수행하고 있는 상

황이라 내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17년도 지표로 발표된 내용은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기관평가 지표로 거의 다루어졌고 업무수행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다. 인터뷰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지표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한 것을 서술하였다. 〈표 2〉의 지표명을 인용하고, 지원청만의 지표인 경우 별도로 표시한다.

담당자 A의 의견이다.

> 1-6. 직원 기록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에 대한 지표로 구체적 실행은 전직원 10% 이상 기록관리 교육 이수, 전문요원(담당자)의 직원대상 기록관리 교육 3회 실시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청의 특징상 직원 구성은 90% 이상이 교원(교사)이다.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아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 교원 업무경감이라는 명제를 거론하며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괴롭힌다는 반발이 생긴다. 교육청 직원 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교육청 전체 학교의 직원 10%를 3회 이상 기록관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상과 목적은 좋으나 여건상 실현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자면 00광역시교육청 직원의 수는 2만여 명이다. 그 중 10%인 2천명을 3회 이상 교육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예산 등 여건상 미지수다.

담당자 B의 의견이다.

> 1-8. 학교 기록물관리 환경의 적절성에 대한 지표로 달성해야 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학교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률 80% 이상, 학교별 자체 서고 설치율 80% 이상, 학교별 자체서고 보유목록 정비율 80% 이상을 해야 이룰 수 있다. 평가 시 제출 자료는 첫째, 학교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공문, 둘째, 학교별 자체 서고 설치 증빙 사진, 셋째, 학교별 보존기간별 기록물 보유현황표이다. 학교 기록물 관리 환경에 대한 지표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9.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중첩된다.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학교별 서고설치 사진과, 보존기간별 목록들을 다 모은다고 했을 때 그 용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100곳을 관할하는 교육청을 예로 들었을 때, 최소 100장의 문서고 사진과, 100개의 보유현황표 목록을 수집, 정리, 가공해서 자료 제출해야 한다. 소요 시간과 노력 등 투입하는 행정력 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제출했을 때 현재의 국가기록원 소수 평가 담당인력들이 200여 곳 정도 되는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검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적은 좋으나 실현의 미가 없어 보이는 지표다.

전문요원들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지표가 기존의 전자기록물 이관과 RMS 운영과 관련된 지표가 현재의 교육청 상황 상 맞지 않다고 느낀다. 1-10.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여부, 2-6. RMS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여부, 2-7. 이관대상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 변환 여부, 2-8. 처리과 전자기록물 RMS 이관 여부 등의 지표이다. 2016년 6월 현재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지표가 있다는 것만 거론하고 생략하겠다.

담당자 C의 의견이다.

교육지원청의 2-8.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지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비전자기록물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록관에서 수행해야할 내용은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철 목록과 건 목록의 사진과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철 목록

과 건 목록의 사진이다. 이 지표의 현장실현성 여부는 1년안에 수행하는 것이 거의 100% 불가능하다. 기록관과 학교(처리과)에서 가능한 것은 기록물철 목록 정도는 가능하다. 보통 기록물관리를 할 때 철이나 권별 제목이나 내용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철의 건별 목록을 1년 안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기록관, 혹은 문서고에 1만 권의 기록물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분석한다. 1만 권의 건별 색인목록을 추출해서 제출하려면, 1권당 문서고에서 문서를 빼서 이동, 검토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20분, 입력시간을 10분으로 가정하면 30분 정도가 걸린다. 30분×1만 권 = 2권당 1시간, 총 5,000시간이 걸린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온종일 작업한다면 625일, 1달에 20일 작업을 가정하면 개월수로 31개월이 넘는다. 혼자 한다면 2년 7개월 동안 오직 이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의 1인 기록관체제에서는 불가능하고 이 작업을 전담할 인원과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할 작업이다. 1명이 1년 동안 실현가능한지 고려하지 않은 지표로 보인다. 설사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 또 작업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능성, 문서의 오분류를 찾고, 필요에 따라 분리편철 혹은 재편철 등 작업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실제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 실현하기에는 전담인력, 예산, 시간, 공간 등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록관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인 교육지원청 상황을 감안하면 실현성이 매우 부족[5]해 보인다.

담당자 D의 의견이다.

2-9.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여부 지표이다. 그 실행내용은

5)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등의 이유로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예산 논란이 몇 년째 되고 있어, 현장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담당자가 많다.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실적으로 '기록물 이관 완료 처리과 수/전체 처리과 수'를 다룬 것이다. 실행지표로 첫째, 각급기관 조직도(소속기관 포함) 혹은 처리과 목록, 둘째 이관결과 보고서, 셋째 이관 및 이관연장 신청/승인 공문, 넷째 처리과 이관대상 없음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대단히 형식적인 지표로서 현실여건상 학교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물은 교육청 기록관으로 이관이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기록관으로 이관연장신청 공문을 발송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의미가 없고 공문의 개수만 늘린다는 지적으로 지난 2014~2016년 2년간은 없어졌는데 2017년도 평가대상으로 부활이 되었다. 학교업무경감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에 최대한 공문을 적게 내려 보내야 하고, 성과나 의미가 없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청에선 문제가 많은 지표이다.[6] 지표설명 부분에 교육청 단위인지, 학교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지표이다. 기록관 서고에 공간이 불충분한 교육청의 사정상 비전자기록물 이관을 해마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의미가 모르겠다.

담당자 E의 의견이다.

2-10.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여부 지표이며, 2013~2014년도 시행된 지표였으나 목적달성이 되어 사라졌다 다시 부활한 지표이다. 기록관에서 비상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대비계획과 관련 물품의

6) 매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공문감축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 평가를 받는 교육청 사정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집계 수합하는 과정에서 증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로 발송하고 수합하는 공문 하나하나에 근무평가 점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가 없을 경우 담당자와 지휘계통에 대한 공문 발송에 대한 제한도 많이 있다. 업무경감과 공문감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표하는 집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문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다수 있다. 전월·전분기·전년 대비 공문 감축 및 증감 결과가 인사 등에 반영되는 분위기에서 업무담당자부터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업무와 해당 공문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치는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이 지표의 실현을 위해 근거로 제시한 것은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v1.1) 표준이다. 이 표준은 기록관의 보안 및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을 피상적으로 담고 있어 기록관에서 비상시 대비 물품이나 구체적 행동 내용은 없거나 미흡하게 느껴진다. 업무수행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도 현장 상황 상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재난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표준은 참고하기 어렵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표를 추진을 위해서 뿐 아니라,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표준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담당자 F의 의견이다.

3-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지표와 3-2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관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표이다. 기록관단위 보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지표로 생각된다. 법률상 기록관은 10년 이하짜리의 기록물이 대상인데 실제로는 30년, 준영구, 영구기록물까지 다루고 있어 업무내용상 맞지 않다고 본다. 열람 공간 확보와 보유목록 공개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기록관의 업무 수행 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지표다. 물론 수행하면 좋겠지만 1인이 수행하기에 정말 많은 업무를 감당하는 기록관 여건상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지표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없어져야 할 지표로 여겨진다. 정 필요하다면 법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록관에서 주로 다루는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문제, 기록관당 의무 배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수 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중점추진사례에 대한 담당자 G와 H의 의견이다.

> 3-3. 기록관리 중점 추진 지표는 2016년까지 10점짜리 기록관리 우수사례가 지표명이 바뀌고, 배점이 6점으로 낮아진 사례다. 제출 사례도 1개로 제한하고 있어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배점은 6점으로 다른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도 94점이 되므로 중점추진 지표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받을 수 없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과정과 결과를 국가기록원의 최종발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2015년 이전과 변함이 없다. 현재와 같이 일부 사례의 제목만 공개하는 것은 파급효과도 떨어지고 기록관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피평가기관의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제출한 문서와 증빙자료로 점수를 주었던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수사례가 우수사례로 전파가 가능했던 적이 있는지, 다른 기관들은 벤치마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 기관에서 중점을 기울여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여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어도, 이에 대한 피평가기관과 국가기록원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숱한 사례를 볼 때 실제 지표수행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많은 기록관리 영역의 실제 사례가 지표라는 형식으로 담아내고 표현하고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것을 공개할 의지와 추진 목표, 방향 설정이 없다면 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2) 평가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기관평가를 시행하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의 담당자들이 여러 경로로 많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평가제도나 평가지표는

기록관리의 발전이라는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한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표 각각의 문제점보다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를 하는 근본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둘째,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전문위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의 의견 외에도, 피평가기관에서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 적용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견수렴 과정이 아닌 일선의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는 실제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최하 2년 정도의 시범실시가 필요하다. 시범실시를 한 이후 그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면 확대하거나, 현장에 적용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면 해당 지표를 폐기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지표를 만들고 발표할 때, 피평가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제시와 동의를 거친 후에 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다섯째, 기관평가가 법제도를 바탕으로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함이라면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법제도가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결론

기관 현장의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평가를 했다면 10여년의 성과와 기록관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이 공공표준으로 채택한 표준운영절차와 기관평가를 수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미채용한 기관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법령에서 말하는 의무사항이며 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다. 전문요원이 채용된 기관에서 기록관의 인력과 재원이 평가지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진지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1인 기록관 현장에서 평가지표가 과다하거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관 뿐 아니라, 처리과(학교)의 자원을 낭비하며 구성원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보아야 한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해온 10여 년간 기관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라 힘들게 한다는 인식도 상당 부분 생겨난 것 같다. 기록관리 기관평가가 교육청 기록물관리 현장에서'교직원과 학교 업무경감'이라는 대명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영화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등장인물들은 "사건은 현장에서 일어난다. 현장을 벗어나지 마라"고 말한다.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도 실제 집행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17년도부터 적용될 평가지표가 현장에서 기록관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기록관이 해야 할 이상적인 업무를 평가지표로 강제한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힘든 이상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 기관평가가 실제 현장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장의 경험이 합쳐져 현실성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2011. 2012년 기록관리 평가계획.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a.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자료집.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b. 2017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
권도균. 2016.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기록학연구』, (48), 180-208.
김솔. 2010. 기록관리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 평가지표 재설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백미점. 2010. 기록관리 성숙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신원영. 2014. 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 · 기록관리학과.
이영숙, 천권주. 2006.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27-56.
전수진. 2008.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기록학연구』, (18), 3-36.
최현난. 2010. 기록관의 기록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체계적 확산 방안.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